

#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

시행: 2024. 10. 07.

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의 학습 및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 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·기능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“장애 학생”이라 함은 본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.

제3조(설치) 센터는 서울 및 국제캠퍼스 미래혁신원 미래혁신단 산하에 각각 설치한다.

## 제2장 센터 기능 및 조직

제4조(기능)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·담당한다.

- 장애학생의 학습 및 대학생활지원 정책의 수립 및 지원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  - 장애학생의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
  - 장애학생의 편의시설 제공 및 개선에 관한 사항
  - 장애 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·교육에 관한 사항
  -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
  - 기타 장애학생 지원에 관련된 제반 사항
- ②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
- 센터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- 센터장은 제1호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총장은 제2호에 따른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한다.
- ③ 센터는 제1항과 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유관 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조직) 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센터에 센터장, 전문행정인력, 조교, 장애학생 지원위원회, 장애학생지원실무위원회,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

제6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본교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- 교육학, 사회복지학,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
  - 교육, 보건·의료, 복지 등 분야의 「자격기본법」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
  -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-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총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
- ② 센터장은 센터의 통상 업무를 관리하고 제9조에 해당하는 사안은 장애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

## 제3장 장애학생지원위원회

제7조(설치) 장애학생의 학습·대학생활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침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장애학생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제8조(구성) ① 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기획조정처장, 교무처장, 입학처장, 총무관리처장, 국제처장, 중앙도서관장, 건강센터소장, 생활관장, 교수학습지원센터장, 장애학생의 소속 학(부)장, 후마니타스칼리지 학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은 본교 교직원 및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  
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 
③ 간사는 센터의 직원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.

제9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애학생의 학습·대학생활지원 정책의 수립 및 지원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2. 장애 학생의 편의시설 제공 및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
3.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·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
4. 기타 장애 학생 지원에 관련된 제반 사항

제10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회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산하기구)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장애학생지원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#### 제4장 장애학생지원실무위원회

- 제12조(구성) ① 실무위원회 위원은 기획조정처, 학사지원팀, 학생지원센터, 입학처, 총무팀, 관제팀, 국제처, 미래인재센터, 중앙도서관, 건강센터, 생활관, 교수학습지원센터, 후마니타스칼리지 소속 직원 및 장애 학생 소속학(부)과 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관계 부서 직원을 추가 할 수 있다.  
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센터 계(과)장이 되고 간사는 센터소속 직원이 된다.  
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한다

제13조(회의)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# 제5장 특별지원위원회

- 제14조(구성) ①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,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 
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  1. 본교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
  2.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
  3.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전문가

제15조(심의사항)

1.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
2.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·결정
3.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1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회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6장 보칙

제17조(보칙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### 부칙

①(시행일) 본 규정은 200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규정의 폐지) 본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장애학생지원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.

### 부칙

본 규정은 2019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

본 규정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

본 규정은 2023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

본 규정은 2024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.